

산지유통사업체계 개선방안

2012. .



농림수산식품부

순서

I 산지유통정책 현황진단

II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향

III 사업별 개선방안

I. 산지유통정책 현황진단

방만한 사업 추진
<大馬不死>

- 컨트롤타워 부재로 유사한 목적·방식의 사업 분산 추진
 - 조직육성 : 6개사업, 8,500억원('12년)
 - 시설지원 : 6개사업, 1,400억원 ('12년)

선택과 집중
시스템 미약

- 사실상 지원·강등 기준 없음
 - 2년 연속 하위 5% 경우, 전문조직에서 탈락되지만, 이 경우에도 일반조직으로 선정되어 자금 수혜
- 성장 욕구 없이 현재에 안주 **(한번 공마조직은 영원히 유지)**
 - 성장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 미흡

산지에 집중된
사업체계

- 도매소비지 정책과 연계 없이 산지에 집중지원 구조
 - '12년 현재 산지유통활성화사업, 수급안정사업의 용자금액만도 2조원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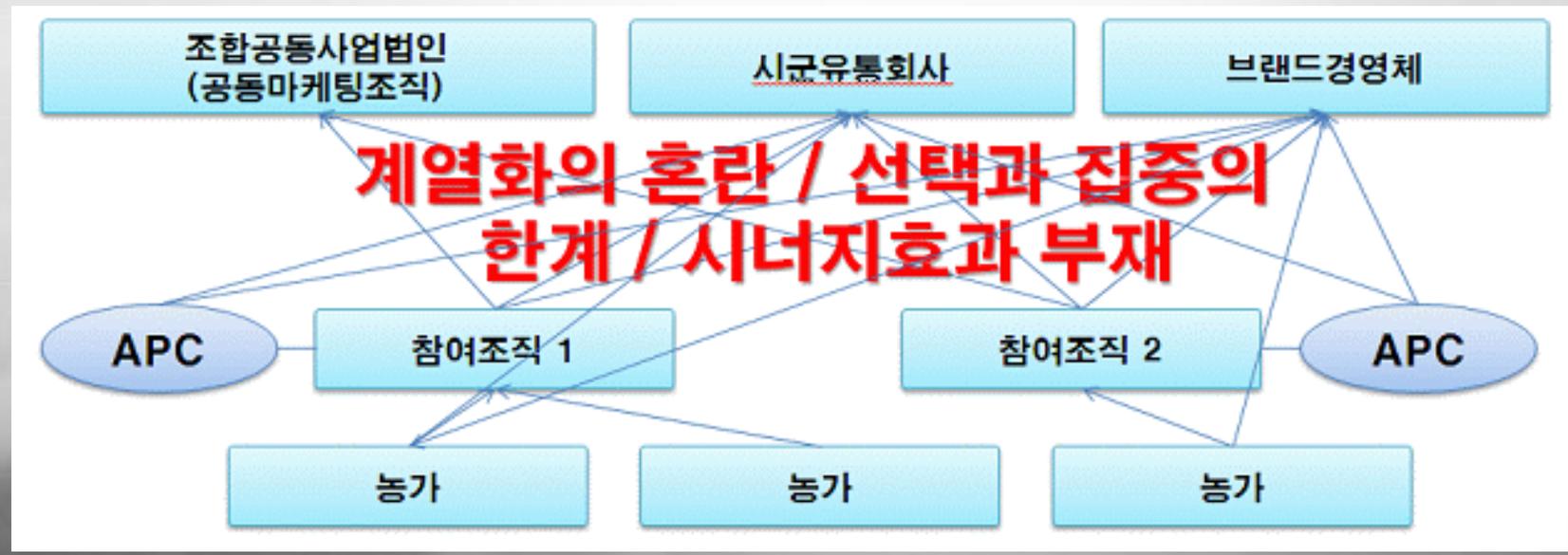
개별경영체 위주 지원

- 규모화 진전 저조



현행 산지유통 사업체계는 사업간 연계성 미흡으로

- ◆ “산지유통 계열화 체계의 혼란” 초래
 - = 산지 조직화·규모화 정책이 오히려 산지 조직화·규모화 저해
- ◆ 정부사업 수혜목적의 부실구조 급조 유인 제공



Ⅱ.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향

사업 통합 및 연계 강화

- 농식품부 유통정책과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→ 사업통합관리(총괄·조정)
 - 산지유통활성화사업(Hub) : 조직육성 기본사업
 - 개별사업(Spoke) : 기본사업과 연계

선택과 집중 시스템 강화

- 페널티 강화 :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원후 3년후 등급 승급못할시 지원중단 (연계사업 지원 역시 중단)
- 인센티브 강화 : 일정등급 이상 조직에 개별사업 지원
 - * 예) APC사업 :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조직에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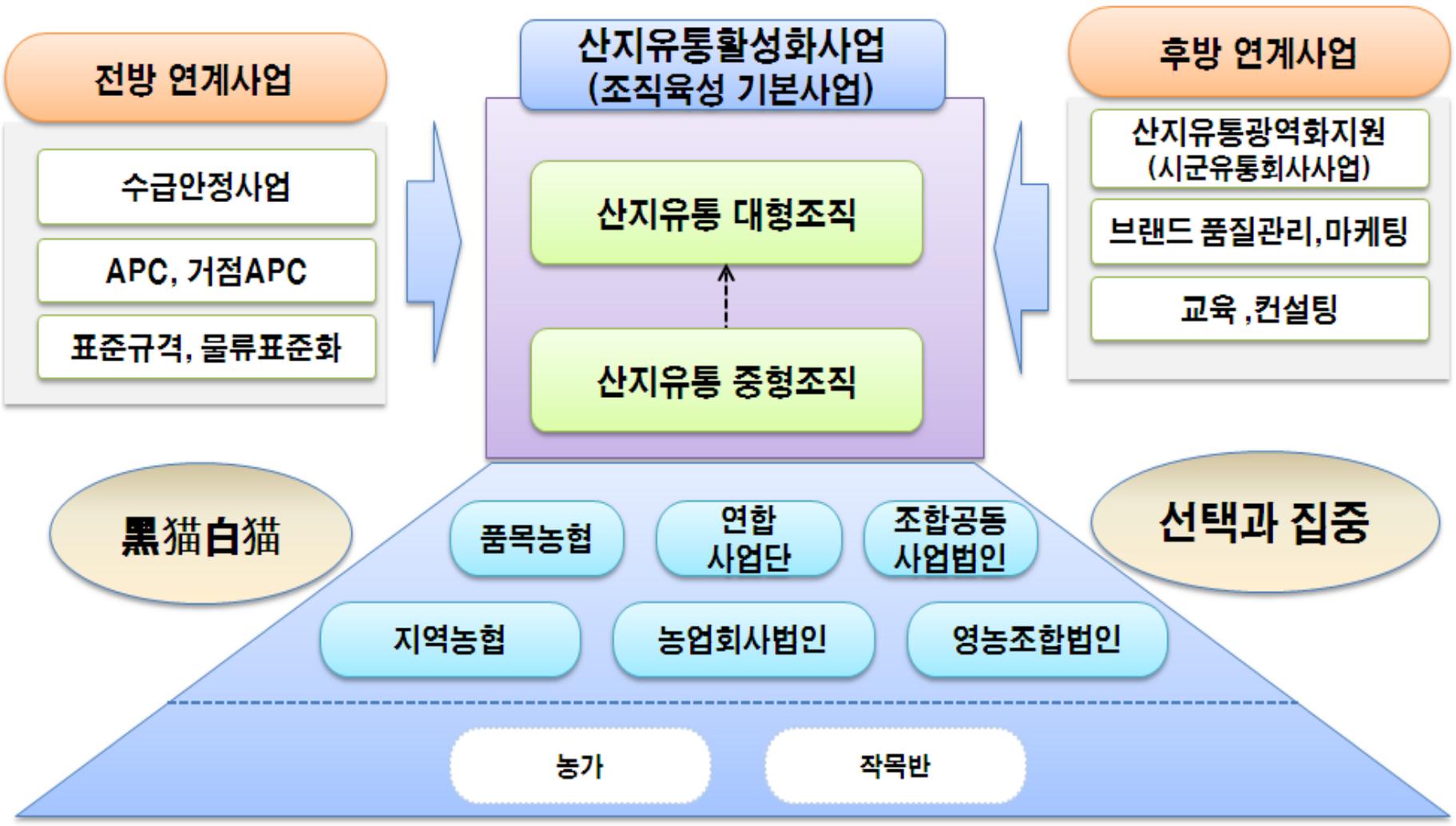
도매·소비지 연계 방안 모색

- 산지유통사업 개선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전국단위 판매회사와 연계

통합 경영체 위주 지원체계 개편

- 합병·계열화 유도를 통해 산지의 시장교섭력 및 취급액 증대 촉진

개선 후 산지유통 사업체계



Ⅲ. 사업별 개선방안

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

- 산지유통활성화사업
- 시군유통회사 지원사업
- 원예·과실 브랜드 육성사업

1. 산지유통활성화사업

조직관리단위를 등급제로 개편하고, 등급제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중단제도 운영

등급기준

■ (현행) 취급액 → (개선) 공동계산 취급액

등급분류/ 지원한도

■ (현행) 3단계 (개선) 대분류 2단계, 세분류 15등급

공동마케팅조직	300억원	➔	대형조직	5등급	500억원
전문조직	70억원		중형조직	10등급	300억원
일반조직	30억원				

페널티

- 정부자금 지원 3년 후 등급 승급 못할 경우, 등급승급 요건 달성시 까지 지원중단 (예 : 중형조직 5등급 → 4등급)
- [현행] 전문조직만 2년 연속 하위 5% 퇴출 [일반조직 지원가능]

인센티브

■ 대형 : 무이자 50억원 이내 / 중형 : 15억원 이내, 금리차등(1~3%)

지자체역할

■ (현행) 없음 → (개선) 평가신청·결과통보 등 지자체 경유

사업연계

■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활성화 조직에 한해 개별사업 신청자격 부여

공동계산제 확대 및 규모화 기반 조성

단순수탁

- (현행) 자금지원 및 사업의무량 인정 → (개선) 배제

종합평가

- (현행) 공동계산실적 38% → (개선) 44%로 확대
- (현행) 단순 취급액 22% (개선) 16%로 축소

신청자격

- 매출액 50억원 이상 &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 &
- 공동계산액 비율 15%로 강화

지원대상

- '14년부터 읍면단위 지역조합 및 개별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

사업의무량

- 참여조직(농가 포함)은 통합조직에 출하한 실적만 인정
- 사업의무량 확대는 '15년까지는 150%로 유지 검토

참여조직

- 최소 5억원 이상 출하한 조직에 한해서 참여조직 인정

2. 시군유통회사 지원사업

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,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

선정대상

-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직(대형) 중 일정요건 충족 조직
- 기존 조직(농협, 농업법인 등)과의 협력체계·계열화 수준 등도 고려
- **특정품목을 중심으로 광역적으로 활동하는 '품목중심조직'도 포함**

출자형태/ 조직구조

- **[현행]** 설립자본금 30억원 이내 → **[개선]** 총자본금 10억원 이상 (3년내 100억원)
- 지자체 의무출자(1/4 이상) 요건 삭제(선택사항)
- 조직구조(주식회사형 법인) 요건 삭제(**조합공동법인 등 추가**)

자금지원

- 보조 : **[현행]** 20억원 / 3년 → **[개선]** 20억원 / 5년
- 용자 : **[현행]** 30억원 → **[개선]** 산지유통활성화 등급별 차등지원

지자체역할

- 사업신청, 운영자금 배정 등 지자체 경유, 관내 광역유통주체 관리

3. 원예·과실 브랜드 육성사업

산지유통활성화 조직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전환

지원대상

- 산지유통활성화 조직으로 한정
-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활성화 조직에 신청자격 부여

구 분		현 행	개 선
원예브랜드		브랜드 경영체 [사업품목의 지역통합 브랜드 운영가능 조직]	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조직
과실브랜드	전국공동	7개 시도이상의 광역조직 [전국 생산량의 40% 이상 품목 3개 이상]	현행 유지
	지역공동	FTA기금 과실생산·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[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 이상]	공동계산취급액 20억원 이상 조직

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개별단위사업

- 산지유통센터(APC) 건립 지원사업
- 채소·과실 수급안정사업
- 물류표준화,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

현황 및 문제점

- 기초조직(작목반)부터 대규모 조직까지 자금지원 분산
 -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조직 중심 지원체계 미흡
- 총괄·조정 기능 미흡으로 사업간 연계성 취약
 - 산지유통 계열화 체계 혼란 가중 및 정책사업 수혜목적의 부실조직 급조 유인 제공

사업연계 강화

- 개별단위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(조직육성기본사업)의 연계사업으로 전환
- ➔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활성화 조직에 한하여 사업 신청자격 부여

사업 통합관리(총괄·조정)

- 개별사업별 자금지원 방식을 통합 메뉴얼 방식(일괄신청·지원)으로 전환
- 개별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시행하되, 유통정책과가 사업 총괄·조정
 - aT를 통해 사업별 지원내역 D/B관리, 사업계획서 예비검토(중복여부) 등

1. 산지유통센터(APC) 건립지원사업

우선지원

- (현행) 없음 → (개선) APC간 통합, 수직계열화에 한해 지원

대상자선정

- (현행) 개별 신청건별로 타당성 평가
- (개선) 시·군단위 종합계획 평가 후 개별사업 평가

신규지원

- (현행) 지속 확대 : ('00) 173개소 → ('11) 330개소
- (개선) 최대한 억제, 보완사업 위주 지원

지원한도

- (현행) 신규 20억원, 보완 8 → (개선) 확대 : 신규 50억원, 보완 30
- [신규 25억, 보완 15억 이하 지원제외]

사업연계

- 산지유통활성화 조직(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조직에 지원

※ 거점 APC 지원(FTA기금) : 공동계산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에 지원

2. 채소·과실 수급안정사업

수급안정사업 존치 필요성은 인정하되, 품목특성에 따라 차별적 접근

(노지채소 : 수급조절 필요성 큼 / 시설채소, 과실류 : 수급조절 필요성 작음)

시설채소 과실류

- 산지유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, 폐지

노지채소 사과,배

- 무이자 유지, 선급금 지원 중단('13년부터 매취자금 중단 예정)
- 참여 대상조직 요건 강화
 - 규모화계열화된 산지조직에 한하여 사업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역량이 없는 조직의 사업배제 및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충돌 최소화
- 사업주체를 농업법인으로 확대(aT 주관)

3. 물류표준화 /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

신청자격

현행

- **물류표준화사업** :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단체, 작목반
- **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** :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조직, 공동마케팅조직 및 개별농가

개선

- 사업을 통합하여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
 - 공동계산취급액 15억원 이상 조직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

감사합니다